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차임금 근거 신설〉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14호)

2025.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2214114)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차입금 근거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등)	3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22141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11.
3. 회 부 일 : 2025.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며 기관 자체 수입을 제외한 예산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임.

그런데 현행법은 재원 조달 방식을 출연금이나 수입금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나 사업수입 예측 오차, 사업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경우 차입금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실정임.

반면, 국토부 산하의 다른 수지차 보전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차입금을 통한 재원 마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항공안전기술원 역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 시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지속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차입금 근거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제12조(재원) ----- -----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신설>	제13조의2(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라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¹⁾ 수입과 지출의 차이만큼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임.

현행법에 따라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데,²⁾

기술원은 국가철도공단, 국립항공박물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국토교통부 소관 다른 출연기관과 달리 현행법에 차입의 근거와 재원에 차입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 차입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현행법에

1) 「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2.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3.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따라 기술원의 차입이 허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³⁾

【 개별법에 따른 차입 근거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6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25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

제25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1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제13조(차입금)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3) 다른 입법례에서도 차입의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7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자금의 조달 등)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제12조(자금의 차입 등)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지출, 사업수입 예측 오차,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하게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원의 안정적·지속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기술원과 시공사의 법적분쟁, 공사중단 등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여 잔여 공사비 부족분 10억원을

차입하여 자체 조달하였는바, 향후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차입 필요 시 개정안에 근거하여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조문 정리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4년 항공안전기술원 수입·지출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예 산 (A)	집 행 (B)	차이 (A-B)	항 목	예 산 (C)	집 행 (D)	차이 (C-D)
1. 사업수입	42,477	42,095	382	1. 사업비	39,808	39,333	475
인증수입	2,566	2,318	248	인증사업비	1,456	1,201	255
항공기인증	903	823	80	항공기인증비	501	407	94
항공보안장비· 항행안전시설	617	409	3	항공보안장비· 항행안전시설	397	242	155
경량/초경량인증	1,000	1,031	△31	경량/초경량인증	542	536	6
특별비행승인	46	54	△8	특별비행승인	15	16	△1
수탁연구수입	39,911	39,777	133	수탁연구비	37,361	37,311	50
R&D연구수입	4,465	2,828	1,637	R&D연구비	2,886	1,530	1,356
정책연구수입	35,446	36,950	△1,504	정책연구비	34,475	35,781	△1,306
				기타사업비	992	821	171
2. 사업외 수입	357	328	29	2. 인건비	8,075	8,075	-
3. 결산잉여금	960	960	-	3. 경상운영비	2,122	2,105	17
4. 정부출연금	5,647	5,647	-	4. 자산취득비	15	15	-
5. 차입금	1,000	1,000	-	5. 예비비	360	-	360
				6. 차입금이자상환	60	7	53
				7. 처분전 결산 잉여금	-	496	△496
총 계	50,441	50,031	410	총 계	50,441	50,031	410

※ 자료 : 항공안전기술원

- 4) 개정안은 1의2로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을 신설하고 있으나,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국토안전관리원법, 국가철도공단법 등에서는 주된 재원인 사업 수행 수입금을 앞에 배치하고, 상환의무가 있는 보충적 재원인 차입금은 그 다음에 배치하고 있어 제2호(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뒤에 차입금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제12조(재원)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1의2.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2. 3. (현행과 같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차입금 확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80